

Korean Tax Update

September 2020, Issue 75

[조세뉴스]

기획재정부, 2020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전문보기]

기획재정부는 4차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였음. '20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조세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 정부에서 그간('17~'19년) 수립해온 중장기 계획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재정여건 등 조세환경 변화를 중장기 세입전망 및 정책방향에 반영함.

기획재정부,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 관련 보도참고자료 [전문보기]

기획재정부는 개인 유사법인에 대한 배당간주 제도는 경제적 실질이 개인사업자와 유사하고, 소득세 부담 회피가 큰 법인에 한해 적용하려는 제도로서,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 규모 등에 관계없이 생산적·합리적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임을 밝힘. 해당 제도는 배당가능한 소득의 50% 또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며, 배당으로 간주하여 먼저 과세된 금액은 향후 실제 배당을 할 때 배당소득에서 제외되거나, 관련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에서 차감됨. 또한 해당 제도는 그간 누적된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으며, 2021년 사업연도 이후 발생하는 유보소득부터 적용할 예정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보기]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9.14~9.21)함. 이번 개정은 기업의 복리후생 제고를 위해 사용자가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조사 관련 재화의 범위를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비과세 금액 한도를 확대하고, 국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외고속버스 여객운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영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판례]

원고가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에게 해당 건축물을 임대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대법원 2020. 8. 7. 선고 2020 두 40143 판결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은 '직접 사용'할 목적을 감면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조 제5항은 일정 기간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있고, 추징은 일단 면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세액을 면제한 후에 당초의 면제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부과하는 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괄호규정(이 사건 괄호규정)은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취득세 면제대상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도 '직접 사용'에 포함된다면 굳이 위와 같은 규정을 둘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괄호규정은 일반적인 '임대'는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지만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산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아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에게 해당 건축물을 임대한 이상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발생한 보험금등 지급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준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국승)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 두 30290 판결

-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이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책임준비금에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의 사유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가산하도록 한 이유는, 책임준비금의 적립 목적인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등이 실제로 지급된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에 대한 비과세를 그대로 유지할 조세정책상 필요가 남아있기 때문인데, 보험금등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책임준비금 상당액을 회계장부상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한 경우에는 보험금등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고 해당 금액에 대해 회계장부상 책임준비금 계정에서 기타충당부채 계정으로 계정대체만 이루어질 뿐이어서 보험금등이 실제로 지급된 경우와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정상으로만 소멸한 책임준비금까지 비과세하는 것으로 할 조세정책상 필요가 없는 점, 2010. 2. 18.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에서 '계약소멸'이라는 표현이 삭제되었는데, 그 개정 취지는 보험상품의 발달로 계약소멸 없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이 확대됨에 따라 계약

소멸이 없더라도 책임준비금이 소멸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것이고, 개정 전후의 두 규정 모두 보험금등이 실제 지급됨으로써 책임준비금이 소멸된 경우를 전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험금등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계장부상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한 책임준비금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이 정한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례]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조심 2020 인 1233, 2020. 7. 27.

- 처분청은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해당 과세자료에 대해 청구인을 상대로 1회의 해명안내요구를 한 것 외에는 별도의 조사나 확인 없이 조사청이 송부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청구인에 관한 과세자료를 송부받은 후 약 5년 10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도과가 임박하여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과세관청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면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박탈할 수 있게 되어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과세관청의 귀책있는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이 초래되도록 하는 것은 조리에도 맞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소멸시효 완성 전 쟁점체납세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20 지 0062, 2020. 8. 6.

-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에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채권도 그 성질상 「민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준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는 점,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면 되는 것이므로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것이고, 그와 같은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면 족하므로(대법원 2006다22968), 청구인이 이 건 압류해제 이후 5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쟁점채납세금의 일부를 납부한 것은 쟁점채납세금의 존재 및 액수 등을 인식한 것으로 「민법」 제168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인 “승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압류해제 이후 5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쟁점채납세금의 일부를 납부한 날에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채납세금에 대한 환급청구를 거부하고 쟁점채납세금 징수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급여 및 채권을 압류 및 추심통지 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운송료를 임의로 인하여 거래처에 지급한 후 거래처가 제기한 운송료 지급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인하운송료 초과분에 대한 매입세액이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취소)

조심 2019 서 4405, 2020. 8. 24.

-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계약은 장기계약으로서 요율이 5년간 고정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운송료의 인하를 요청한 행위는 쟁점계약 상 쟁점거래처가 인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속력은 없으나, 계약 체결 이후 일정 시점에 유가하락 등의 사유로 계약 요율이 시가 대비 고가가 되었다거나 청구법인이 이를 근거로 요율 인하 요청을 하였다든 사실 만으로 시가를 초과하여 운송료를 지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판결에 의하면 법원은 쟁점거래처 또한 하도급대금을 부담하므로 운송료를 인하할 경우 영업손실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운송료가 변경·조정되어야 할 정도에 이를 만한 사정변경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한 점, 쟁점운송료의 경우 청구법인이 미지급대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지급하게 된 것으로, 설령 동 금액이 통상운송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쟁점거래처와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접대'를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인 접대비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상호합의 개시로 인하여 본세가 고지유예된 경우, 상호합의 종결전에 가산세만을 별도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20 인 1864, 2020. 8. 31.

-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어서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

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라 할 것으로서(대법원 2004두2356), 가산세가 고지유예 되기 위해서는 본세의 고지유예 승인여부와 별개로 가산세 부분에 대한 고지유예 신청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고지유예사유에 대한 심사·승인이 있어야 할 것이고, 해당 고지유예의 승인여부는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처분청은 2020.1.29. 간주배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본세)에 대한 고지유예를 승인하였고, 청구법인의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인 2019.11.11.은 위 원천징수세액(본세)에 대한 고지유예 신청이 승인되기 이전이었으므로 위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는 본세와 별도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더욱이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고지유예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해당 가산세에 대한 고지유예 신청을 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2019.10.28. 당초 고지유예 신청'을 하면서 또는 해당 신청을 취하하고 '2019.11.11. 고지유예 신청'을 다시 제출하면서 모두 가산세 부분에 대한 고지유예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처분청에서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별도로 고지유예 승인하지 아니한 데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심사]

증권사가 후입선출법으로 관리해 온 이 사건 양도주식에 대하여 후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취소)

2019-심사-136, 2020. 8. 20.

- 이 사건 양도주식은 증권사에서 후입선출법으로 관리해 온 점이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증권사에 위탁하여 거래한 양도주식은 주권 자체로 특정할 수 없어 증권사의 관리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실제 주식의 거래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으나 현행법 상 증권사에 위탁거래된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은 증권회사의 주식 관리가 후입선출법 방식으로 이루어져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특정되는 경우에는 후입선출법에 따른 과세가 정당하므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이 사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증권사가 후입선출법으로 관리해 온 이 사건 양도주식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초 선입선출법에 따른 신고가 타당하다며 후입선출법을 적용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함.

장비제작에 투자한 금액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 11 조에 따른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기각)

2019-심사-598, 2020. 9. 3.

- 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장비를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작한 것은 아니나 연구개발에 계속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장비 투자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 11 조의 입법 취지는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신규 투자를 지원·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 점,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된 설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하였더라도 당초 판매 목적으로 투자한 금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 11 조 제 1 항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등의 유권해석에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오류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장비는 당초 판매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나 성능 미달로 판매가 불가하여 달리 사용처가 없게 되자 연구개발에 사용된 것이므로 연구개발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장비의 제작에 투입된 비용을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한 금액이라고 보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기획재정부 등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청구인의 이 사건 장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 11 조의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되었다고 보긴 어려움.

[예규]

성과급 일부를 이연지급하면서 매년 전체 성과를 재평가하여 당초 성과급을 정산한 정산차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511, 2020. 6. 26.

-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등에 대하여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초 이연하여 지급하기 위해 회계상 미지급금으로 인식한 성과보수보다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어 발생하는 차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 4 조 제 2 항 제 2 호 라목에 따른 '대외 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에 해당하는 것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지배주주 판정시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를 고려해야하는지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0197, 2020. 7. 3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5 조의 3 적용시 지배주주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최대주주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하며, 이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신주인수권증권은 주식보유비율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14, 2020. 8. 9.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3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 10 조 제 9 항 제 2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3 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위탁자)와 토지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사항은 수탁자로 변경하였으나, 설립에 따른 사업시행자 변경은 건축물 사용 승인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수탁자(원시취득자)를 지방세감면대상자에 해당하는 '설립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1949, 2020. 8. 20.

-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에 대한 변경승인(또는 신고)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2 개월 이내인 설립의 완료신고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기간적으로는 설립이 진행되고 있는 설립의 완료신고 이전까지는 '설립하는'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에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설립의 완료신고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됨.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양수인이 즉시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어서 건물가액을 0 으로, 매매대금 전부를 토지가액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경우 개정된 부가법 §29⑨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건물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44, 2020. 8. 24.

-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4 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 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 29 조 제 9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구주를 반환하고 합병대가로 합병교부금을 받은 경우, 합병구주의 반환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70, 2020. 8. 31.

-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로 합병교부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증권거래세법」 제 2 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손금산입 금액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04, 2020. 9. 4.

-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로서 약정된 주식매수 시기에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회계상 상계된 주식보상비용 누적액이 아닌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co@kr.kpmg.com